####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314호

# 2023년도 제2차 ICT R&D 혁신 바우처지원사업 신규지원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2023년도 제2차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관련 규 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1. 사업 개요

#### 가. 지원 대상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ICT 핵심・융합 기술을 이전받아 신제품・신서비스 출시를 통한 융합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법인에 한함)

### 나. 지원 내용

		구분	공모	
예산	내용	융합촉진형(12개월)	방식	
		1년이내 단기사업화가 가능한 ICT 기반 이종기술·신업간 융합 新제품·서비스 개발 및 시업화 지원		
총	지원내용	* 이종기술: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상(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별표2) 중분류 이상 기술간 결합 * 이종산업: ICT와 비ICT기술제품의 결합(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개발기술 은 ICT 또는 ICT가 융합된 기술 이어야함)	자유	
103.045 억원	지원기간	12개월	공모*	
	지원예산	103.045억원		
	지원규모	과제당 5억 원 이내		
	지원방법	공동연구개발기관(전문연구기관)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필요기술을 개 발하여 제공(정부는 기업에게 R&D 바우처를 지급하고, 정부지원연구개 발비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함)		

<sup>\*</sup>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과제명, 개발내용 등)을 제안

## 다. 지원 분야

-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국가전략 10대 기술\*\*, 5G, 빅데이터, 비대면(언택) 등 핵심기술 분야 응용 및 사업화 분야 중점 지원
- \*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 ① 스마트시티 ② 스마트공장 ③ 스마트 팜 ④ 핀테크 ⑤ 에너지산업 ⑥ 드론 ⑦ 바이오헬스 ⑧ 미래자동차
- \*\* 국가전략 10대 기술 : ① 인공지능 ② AI반도체 ③ 양자 ④ 클라우드 ⑤ 이동통신 ⑥ 메타버스 ⑦ 블록체인NFT ⑧ 사이버보안 ⑨ 미래자동차 ⑩ UAM

#### [ R&D 바우처 지원 ]



#### ■ R&D 바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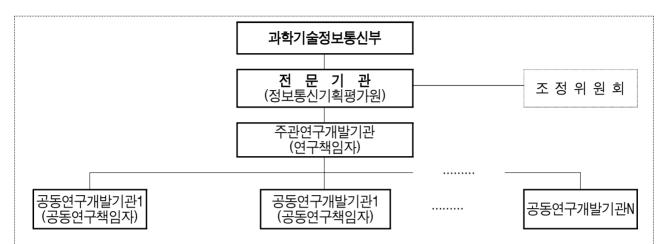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의 필요 기술을 공동연구개발기관(전문연구개발기관)에서 개발하도록 요청하고 연구개발 대기는 바우처(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로 공동연구개발기관에게 지불함

# 2.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sup>*</sup>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관련지침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3. 사업 추진체계

### 가. 사업 추진체계



- \* 본 시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1:1 매칭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매칭하여 참여 가능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시업을 수행하는 기관임
- \*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함
- \* '공동연구책임자'란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함

### 나. 신청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국내 중소기업(초기창업자(기업) · 벤처기업 포함) 및 중견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에 한함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 \* 초기창업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의3항에 따른 설립 3년 이내(공고일 기준) 기업
- \* 벤처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른 기업
- \* 한국산업기술협회(http://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 : ICT R&D 역량\*을 갖춘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또는 주문연구개발업으로 등록된 전문연구사업자\*\*
- \* ICT R&D 역량 : ICT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시설 및 장비,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개발인력 확보 등 전문기술개발 능력
- \*\* 주문연구사업자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한 국연구산업협회에 등록된 "주문연구개발업" 기업에 한함('시험/검사 및 분석업' 제외)

\* 동 사업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u>'주문연구사업자(주문연구개발</u> 업)'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수요기술에 대한 <u>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사</u> 업에 참여하므로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u>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u>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 28조 3항)

#### 〈 R&D 혁신 바우처 지원 총량제 운영 〉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간 1개 과제에 대해 수행 가능하며, 사업화에 성공(정부지원금의 4% 이상 매출 달성)한 기관에 한해 총 사업기간( '20~' 24) 동안 최대 2회까지 동 사업 수행가능( '20년도 사업부터 적용)
  - \* 1개 기업이 2개 이상 과제의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선정된 과제 중 1개 과제만 수행 가능
- ▷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책임자) 연구개발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 책임자는 연간 1개 과제(동시 2개 과제 수행불가)에 대해서만 수행가능( '20년 사업부터 적용)

### 다. 지원규모

○ (융합촉진형) 과제당 총 5억 원 이내

## 라. 지원기간

○ (융합촉진형) 12개월( 1차년도 2023.06.01.~2024.05.31.)

# 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기준
o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연	o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기관부담연구
구개발비의 <u>80% 이내</u>	개발비의 5% 이상
o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연	o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기관부담연구
구개발비의 70% 이내	개발비의 6.5% 이상

<예시 :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출연금)를 5억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단위 :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	연구개발비 (사업비의 20% 이상) 연구개발비		
(사업비의 80% 이내)	현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	현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95%)	소계	합계
500,000	6,250	118,750	125,000	625,000

#### 바. 중소ㆍ중견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 동 사업은 R&D 바우처 특성으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주문연구개** 발업 기업(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에 대한 인건비 비중의 제한이 없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계상 가능

# 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총 연구비의 25%에서 20%로 완화함(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75%→80%까지 지원)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
  - 울산 동구, 거제시, 창원 진해구, 통영시·고성군, 목포시·영암군·해남군(18.5.29.~123.5.28.)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포함

### 아. ICT R&D 졸업제 적용

○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은 과기정통부 졸업제 대상 사업으로 주관연구 개발기관 자격으로 최대 5회까지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 ( '19. 2. 13일 시행)

\* 동 사업은 ICT R&D 졸업제 대상 사업이며, 졸업제 대상 사업을 총 5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졸업제 대상사업이 아닌 타 사업은 신청 가능

# 4. 추진일정

일정	추진절차	수행주체
	<u> </u>	
'23.3월	사업공고	전문기관(IITP)
	<u> </u>	
'23.3월 ~'23.4월	연구개발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신청기관/ 전문기관(IITP)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 매칭 지원 신청	이지매칭시스템 (ezmatching.iitp.kr)에 R&D 바우처 매칭 지원
	♪ 온·오프라인 매칭 지원	신청
	Φ	* 온오프라인 매칭 지원
	공동연구개발기관 매칭	: ezmatching.iitp.kr
	<b>\$</b>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	* 주관/공동연구기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
	Û	
′23.5월	사전검토(공고내용과의 부합성 등)	전문기관(IITP)
	<u></u>	
	서면평가	전문기관(IITP)
	<u> </u>	
	발표 평가	전문기관(IITP)
	<b>\$</b>	
	선정과제 확정	과기정통부
	<u> </u>	
6월 ~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전문기관(IITP)/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기술매칭 지원 서비스

- ▶ 수요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찾고 싶을 경우, 이지매칭시스템(https://ezmatching.iitp.kr)을 통해 회원가입 후 매칭 신청 등록 필요
- ▶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IITP 바우처사업 담당자 및 매칭 중개기관을 통해 매칭 지원(상시)
- ▶ 매칭 지원절차 : 이지매칭시스템(ezmatching.iitp.kr)가입 및 매칭신청(기업)→IITP 및 매칭증개기관이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전문기관) 파악 및 추천→매칭상담 추진→매칭연결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바우처지원 사업신청
- ▶ 신청된 매칭수요에 대한 개발이 가능한 전문연구기관을 찾기 어렵거나 기술의 희소성이 높은 경우 기술매칭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음

## 5. 과제 선정

## 가. 평가방법 및 절차

- 1단계 : 사전검토, 2단계 : 서면평가, 3단계 : 발표평가
  - \* 과제접수 상황에 따라 2단계와 3단계를 통합하여 "서면 및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기술성 부분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가 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 종합 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발표평가 후 연구비조정위원회를 통해 전체 예산을 고려한 연구비 조정 가능

### 나. 평가기준

○ 서면평가와 발표평가의 평가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됨

コ	·분		평가항목 및 내용
Т	Œ		
		① 바우처 사업 적합성 및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o 융합촉진형 바우처와의 적합성 * 필요기술 및 적용제품의 ICT 기반 이종 기술·융합 여부, 1년내 단기 사업화 가능여부, 필요기술과 기업 보유기술과의 차별성 o 필요기술의 R&D 범위 및 성능 목표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용 제품·서비스에서 차지하는 창의성 o 바우처 사업 지원 필요성
	사 업 성	② 사업화 계획의 충실성 및 단기 사업화 성공 가능성	* 단기 융합시장 창출 가능성 o 필요기술의 내재화 및 적용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o 단기 사업화 성공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융 합 촉 진 형	(60)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화 의지 및 역량	o 기업의 신시장 창출·탐색 경험과 노력 및 CEO의 사업화 의지 o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화 및 기술 역량 * 사업화 역량: 주력제품군, 최근 3년간 기업매출 성장률, 기업전체 매출액에서 적용제품의 매출액 비중, 필요기술 관련 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 등 * 기술 역량: R&D전담조직 보유, 매출대비 R&D 비중, 기업전체 보유특허 및 필요기술관련 기술제품 보유특허 등 o 수행중·기술지원 후 공동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및 내재화 계획(내재화를위한 R&D인력채용계획 등)
		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R&D역량 우수성	o 연구기관의 관련분야 R&D 역량, 기술협력 및 사업화 지원 우수성 o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해당 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 o 연구기관의 기술력(참여인력장비 등) 보유 자원 우수성 및 활용 계획의 적절성
	기 술 성 (40)	② 수요맞춤형 연구개발 계획의 충실성	o 필요기술 해결을 위한 개발내용의 독창성 및 핵심성 o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필요기술에 대한 R&D서비스의 범위, 기술개발 목표의 충실 성 및 달성 가능성 o 연구개발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o 사업기간 중 각 연구개발기관간 협력체계 및 기술내재화(후속) 지원계획
		③ 사업화 협력계획 (후속지원)의 적정성 및 우수성	o 기술지원 후 사업화 협력계획(후속지원)의 적정성 및 우수성 o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등

#### 다. 평가 시 가점 사항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아래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①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②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 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③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④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⑤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고용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 고용노동부 선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또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기업이 대상이며,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⑥ 지역 소재(본사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기업은 제외) 비ICT기업이 ICT 융합을 통한 신제품・서비스 창출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비ICT기업 여부는 IITP에서 판단할 예정이며, 본사의 지역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 등기부 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⑦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공동연구책임자가 최근 5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R&D지원을 통해 확보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공공기술 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2점)
    - \* 평가위원회에서 "공공기술 확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반영

### 라. 평가 시 감점 사항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아래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감점함
  - ①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또는 기관의 경우(1점)
  - ② 최근 3년 이내(공고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경우 (1점)

# 6. 과제신청 유의사항

#### 가. 지원대상 제외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 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완납(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가능 (분할 납부 또는 미납인 자는 지원이 불가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이 완료된 재무제표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 단, 사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예외
    - \*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이 완료된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미접수 및 필수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2007 PH 07 MA 07 M MOAL X-2 100 01, MOAMA 00 THE AL BAR MARE I MA

### 나.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 동 사업은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다. 지식재산권 및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연구개발 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 R&D 바우처 지원 사업의 성과물 실시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연구결과물 및 관련 지식재산권은 이를 개발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단독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며, <u>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과제종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 전용실</u> 시권 및 이후 3년간 무상 통상실시권 부여됨

- 국외기관이 과제수행에 참여하여 해당 국외 연구개발기관의 수행결과로 발생 한 지식재산권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연구개발기관에 우 선적으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에 사업화 성공을 하지 못할 시 전용실시권을 회수하고 통상실시권으로 전환(천재지변, 제도적 제약사유 발생 등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화 미실시에 대한 정당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제외)
- 단,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형적 결과물은 국가소유로 할 수 있는 바,
  - 본 사업 수행결과의 공익목적 활용을 위해 과제제안서(RFP)에 제시된 유형적 결과물(시스템, 개발 모델 등)은 국가가 소유하며, 또한, 국가는 해당 유형적 결과물 사용에 필요한 무형적 결과물(SW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 연구개발성과의 국가 소유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라. 연구과제 보안에 관한 사항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 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연구 개발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신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마. 연구장비 도입 •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공고 과제는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 도입해야 함
  -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클라우드스토어 씨앗(www.cear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바. 연구개발비 산정,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비 산정 및 시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위탁연구를 위한 사업비 편성 및 집행 불가

- <u>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 개발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에 해당하는 비용(정부지원</u> 연구개발비의 10% 이내) 편성 가능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 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 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사. 실시계약의 체결

○ 실시권한에 대해 아래 가이드라인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 협약체결 시 체결

#### <가이드라인>

연구결과물 및 관련 지식재산권은 이를 개발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단독 또는 주관연구 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며, <u>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과제종료일로</u> 부터 5년간 무상 전용실시권 및 이후 3년간 무상 통상실시권 부여

### 아. 성과 활용 및 공개

-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성과 전시회 참가 요청시 적극 참여
  - \* 협약기간 내 연구비로 참여경비 예산 편성가능
- ○향후 5년간 성과 조사 및 추적 시 적극 참여
  - 사업화 성공 여부, 매출액, 특허, 논문, 고용창출, 제품 상용화 관련 세부적인 내용

#### 자. 기타

- <u>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u> 따른 과제연구자의 3책 5공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3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제신청시 반드시 해당 심의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시설장비 심의요청서'를

####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기재
- 동 사업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용

### 7. 과제신청

### 가. 신청방법

- 기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과제관리시스템(이지원)을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접수
  -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연구개발 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신청을 위해서는 '<u>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u>을 확인하여 관련 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등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연구책임자는 접수기간 시작 전에 준비 필요

#### ▶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전보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 ①,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 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 >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과제 신청·접수 메뉴얼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D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과제접수 매뉴얼(개정판2022.08.01.) 다운로드 및 참고
  -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內 신청·접수 과제 확인 방법

① 공고명 확인

ex.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고명 : 2023년 제2차 ICT R&D 혁신 바우처지원 신규지원 공고

② 사업세부공고 및 지원유형 공모분야 확인

ex. ICT R&D 혁신 바우처지원 → **융합촉진형** 

③ 해당 지원유형 공모분야에 과제 신청·접수

# 나. 사업공고 및 전산접수 등록기간

공고기간	전산접수 등록기간
'23.3.17(금) ~	'23.4.10(월) 00:00 ~
'23.4.28(금) 14:00시까지	'23.4.28(금) 14:00시까지

- \* 신청서 전산등록 마감일 14시 전 까지 반드시 전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마감 시간(14시)이후에는 전산등록(제출) 불가함
- \* 신청서식의 해당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온라인(전산접수)에 등록 완료하여야 함

#### 신청 시 주의사항

-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하루전 제출완료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등록하기를 권장함
- o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 o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제출서류의 미제출 또는 오제출 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평가대상 제외 등 불이익 처리할수 있음
  -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다. 신청 제출서류

- ※ 주의사항: 접수미감 이후 <u>필수 제출서류 등이 누락된 경우</u>에는 별도의 서류 보완요청 절차가 없으며, 서면 및 발표평가 등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mark>필수 제출서류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mark>하고 있으므로 과제연구책임자는 최종 접수 전 반드시 필수제출서류 구비 등을 확인 필요

번호	서 류 명	형태	비고		
1	사업제안 제출공문(필수)	전자파일 (PDF)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명의의 소속기관 공문형식에 따라 사업신청 관련 내용의 공문(필요시 예시 참조)		
2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전자파일 (HWP)	반드시 한글파일 형태로 제출		
3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필수) - 가점 증빙서류(해당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작성 제출		
4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 인서 및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저지하이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 한 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낱장 제출 가능		
5	사업자등록증 (필수)	전자파일 (PDF)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 제출 (주관기관에서 1개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6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만 제출 *한국산업기술협회(http://www.rnd.or.kr)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기능		

- 신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인 과제에 한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 추가 요청할 예정임
- \* 추가요청 서류 : 최근 결산 재무제표(1개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연구결과물 실시권 확약 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문연구사업자(주문연구개발업)(해당시) 등
- 제출서류 내에 신청자격 적정서 및 자기진단서에 가점신청이 체크되지 않거나 가점우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점인정이 안됨

#### <전산 제출서류 참고사항>

A III	E110#1	WA OLD	TIOLDI	7700	DDE	E BOIT	
순번	문서유형	필수여부	파일명	크기(KB)	PDF	등록일자	
1	사업제안 제출공문	필수					첨부
2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	첨부
3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필수					첨부
4	사업자등록증	필수					첨부
5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Į.	첨부
6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필수				1	첨부
7	우대가점 증빙서류	선택					첨부
8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선택					첨부
9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요	선택					
10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2(본	필수				(	첨부
11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3(본	선택					
12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병합문서(F	선택					

○ 전산시스템에서 과제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중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은 위의 문서유형 "②연구개발계획서, ⑩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PART2)" 항목에 각각 모두 첨부하여야 함

# 8.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3. 3. 22(수) 14:00 ~ 18:00, 서울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남) 301호
- 주요내용 :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공고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 \* 상기 일정은 변경이 가능하며, 여건에 따라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음

# 9. 문의처

- (IRIS시스템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IRIS 운영단 : Tel. 1877-2041(IRIS 콜센터)
- (사업내용 및 공고문 관련 문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업확산팀 : 042-612-8270, -8264, -8262